IBK기업은행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6125호(2026.07.31)
유효기간(2027.07.27)

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
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**참고자료**이며, **실제 계약은 본 상품의 약관, 거치식예금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"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", 동 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 "퇴직연금감독규정"이 적용**됩니다. **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**됩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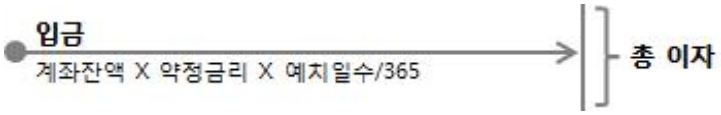
- 상 품 명 : 퇴직연금정기예금
- 상품특징 :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정기예금상품

2 거래 조건

☞ 이자율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2026.8.1일 현재, 이자율은 세전 기준)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취급대상</td><td>· 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</td></tr>
<tr><td>가입금액</td><td>· 1원 이상 제한 없음</td></tr>
<tr><td>계약기간</td><td>· 고정이자율형 :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 또는 31일 이상 5년 이내에서 일수 지정가능
· 변동이자율형 : 1년(3개월 회전), 3년(1년 회전), 5년(1년 회전)</td></tr>
<tr><td>적용이자율</td><td>·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
<table>
<tr><th>구 분(연, %)</th><th>3개월</th><th>6개월</th><th>1년</th><th>2년</th><th>3년</th><th>5년</th></tr>
<tr><td>DB형</td><td>2.56</td><td>2.74</td><td>3.24</td><td>3.13</td><td>3.25</td><td>3.20</td></tr>
<tr><td>DC형·IRP형</td><td>2.46</td><td>2.64</td><td>3.14</td><td>3.03</td><td>3.15</td><td>3.10</td></tr>
</table>
* 상기 이자율은 기준일 현재 이자율로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의 실제적용이자율과 다를 수 있음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이자지급시기</td><td>·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
· 자동재예치 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</td></tr>
<tr><td>만기이자
산출근거</td><td>·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
[이자계산 산식] 계좌잔액×약정이자율×예치일수(입금일~해지전일)/365

</td></tr>
<tr><td>만기처리방법</td><td>[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(DB)]
·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,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자동 재예치
[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,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]
·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
·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와 결합된 경우,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자동 재예치</td></tr>
<tr><td>만기후이자율</td><td>·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재예치
·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 적용</td></tr>
<tr><td>예금 해지 시
불이익</td><td>·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</td></tr>
<tr><td>중도해지이자율</td><td>·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의 경과기간별 일반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(퇴직연금정기예금 적용이자율과 상이함)</td></tr>
</tabl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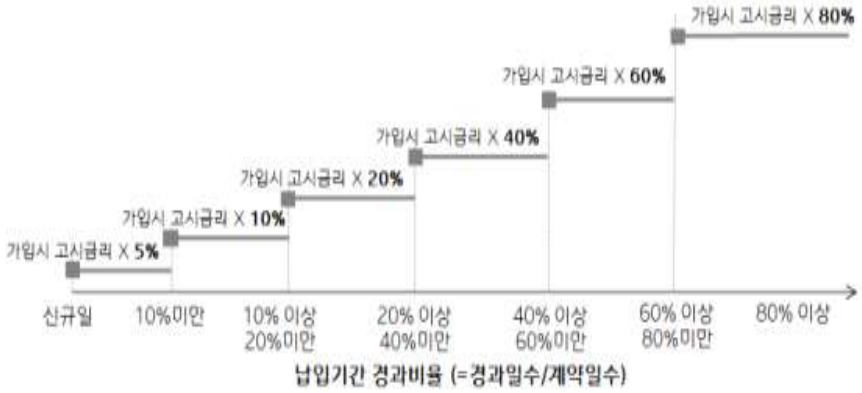
예치기간	적용이자율
1년 미만	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일반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<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자율 산출 기준>

예치 기간	적용이자율 (세전)
납입기간 경과비율 10%미만	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× 5%
납입기간 경과비율 10%이상 20%미만	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× 10%
납입기간 경과비율 20%이상 40%미만	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× 20%
납입기간 경과비율 40%이상 60%미만	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× 40%
납입기간 경과비율 60%이상 80%미만	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× 60%
납입기간 경과비율 80%이상	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× 80%

※ 단, 모든 구간 최저이자율 연 0.1% 적용

1년 이상 3년 미만	일반 정기예금(만기일시지급식) 1년물 기본이자율 적용
3년 이상 5년 미만	일반 정기예금(만기일시지급식) 3년물 기본이자율 적용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중도해지이자
산출근거</td><td>·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(원미만 절사)
<table>
<tr><th>경과기간</th><th>중도해지이자</th></tr>
<tr><td>1년 미만</td><td>
</td></tr>
<tr><td>1년 이상 ~ 3년 미만</td><td>일반 정기예금(만기일시지급식) 1년물 기본이자율 적용</td></tr>
<tr><td>3년 이상 ~ 5년 미만</td><td>일반 정기예금(만기일시지급식) 3년물 기본이자율 적용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특별중도해지
사유 및
적용이자율</td><td>· 다음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약정이자율(가산이자율 포함) 적용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1</td><td>· 퇴직급여지급 및 연급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</td></tr>
<tr><td>2</td><td>·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</td></tr>
<tr><td>3</td><td>·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(단,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)</td></tr>
<tr><td>4</td><td>·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</td></tr>
<tr><td>5</td><td>·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</td></tr>
<tr><td>6</td><td>·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</td></tr>
<tr><td>7</td><td>·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</td></tr>
<tr><td>8</td><td>· 가입플랜 변경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(단, 해지와 동시에 해지원리금 이상으로 이 예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)</td></tr>
<tr><td>9</td><td>·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</td></tr>
<tr><td>10</td><td>·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</td></tr>
<tr><td>11</td><td>·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사유 발생 시</td></tr>
<tr><td>12</td><td>·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</td></tr>
</table>
· 단, 1~10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예금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경과기간별 퇴직연금정기예금 기본이자율 적용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내 용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분할해지</td><td colspan="2">·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
단,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의 경우,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
· 다음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 예외 적용
·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(DB)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경우
·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
·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예금자 보호 여부</td><td>DC/IRP</td><td>해당
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</td><td>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“1억원까지”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</td></tr>
<tr><td>DB</td><td>비해당
예금보험공사 비보호</td><td>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세제혜택</td><td>불가</td><td>·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양도 및 담보제공</td><td colspan="2">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계약해지방법</td><td colspan="2">·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여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위법계약해지권</td><td colspan="2">·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·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자료열람 요구권</td><td colspan="2">·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·유지·관리하는 자료*에 대한 열람(사본 제공 또는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음
*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,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
· 은행은 법령, 타인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 타 제한사항</td><td colspan="2">·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.
· 이 예금은 질권 설정이 불가합니다.</td></tr>
</table>

3 유의 사항

·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**세법·관계법령, 약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.**

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(1566-2566)로 문의주시기 바라오며,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, 금융소비자지원부(080-800-0119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.co.kr)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,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부록>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명
압류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■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사용자	■ 「근로기준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.
가입자	■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.
퇴직연금사업자	■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법령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
디폴트옵션제도	■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제2조제15호에 따른 “사전지정운용제도”로써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적립금	■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.